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448

발의연월일: 2023. 4. 18.

발 의 자:이해식・김정호・이성만

김교흥 • 이동주 • 이학영

민병덕 • 박주민 • 한준호

김민철 · 강병원 · 최기상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기관 중심으로 대응·복구에 대한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행정부처 중심의 재난대응시스템으로 인해 현행법 규정도 부처별로 분산된 권한과 정보에 대한 원칙과 처리 절차가 주로 명시되어 있음.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의 경우, 현행법의 행정중심 재난대응시스템으로 인해 복구의 중심에 있어야 할 재난피해자가 오히려 배제되어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이 커졌음.

이에 따라, 재난피해자와 그 유족의 범위를 정하고, 재난피해자등이 중앙대책본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권리와 정부의 재난원인조사에 참 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담고자 함. 또한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으 로 선포된 재난에 대해 재난원인조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행정안 전부의 임의적 판단으로 재난의 실체 파악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막고 자 함.

주요내용

- 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9조1항 단서 신설).
- 나.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편성 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69조제2항).
- 다. 재난피해자등 및 그 유족은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7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74조의4 신설).
- 라. 제74조의4에 따라 재난피해자등 및 그 유족의 정보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자 함(안 제79조제7호 신설).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기관"을 "전문기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로 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4(재난피해자등의 정보 제공 요청) ① 재난피해자등 및 그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 책본부장에게 제7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재난피해자등의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배우자
- 2. 자녀
- 3. 부모

- 4. 형제자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79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74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재난원인조사) ① 행정안	제69조(재난원인조사) ①
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	
·분석·평가(제34조의5제1항	
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	
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다. 이하 "재난원인조사"라 한	
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	
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u>다만, 제60</u> 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의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원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②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	
난의 경우에는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및 <u>전문기관</u> 등이 공동	<u>전문기관,</u> 재난으로
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표하는
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	사람

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고, 이를 현지에 파견하여 재난원 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생략) ③ ~ ⑦ (생략) <신 설>

- 1. · 2. (현행과 같음)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74조의4(재난피해자등의 정보 제공 요청) ① 재난피해자등 및 그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중앙대책본부 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7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 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 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요청 할 수 있는 재난피해자등의 유 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 <u>1. 배우자</u>
- <u>2. 자녀</u>
- 3. 부모
- 4. 형제자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9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신 설>

7. (생략)

는 사람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 집된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재 난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 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1. ~ 6. (현행과 같음)
- 7. 제74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8. (현행 제7호와 같음)